

GGWF REPORT

2019-25

경기도 소규모 시설 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김혜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연구지원 | 이서현 (경기복지재단 일시사역)

■ **감수위원**

구재관 (연성대학교 교수)

김광진 (평화의 집 원장)

조성숙 (하늘의 별 원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7 E-mail : voiced@ggwf.or.kr

요약

□ 연구의 목적

- 사회복지시설 중 소규모 시설을 정의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내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의 서비스 제공환경을 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지원 내용 제안

□ 연구방법

- 문헌검토와 설문조사
 - 시설 중 소규모 시설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와 현황 검토
 - 실제 소규모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욕구 또는 의견 확인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사업 발전에 반영

□ 조사시설 현황

- 경기도 내 소규모 시설은 장애인복지 시설이 수와 유형이 가장 많고 조사의 응답 비율도 가장 높았음
 - 특히,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의 수가 많고 그 중에는 개인운영시설 31.4%
- 시설은 설치운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 시설이 약 52% 정도로 낙후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
- 종사자 수는 2~5명이 10인 이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시설이 가장 많음
- 시설이 위치한 건물 유형은 노유자시설 이 19.3%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18.8%, 아파트도 17.3%로 나타났음
 - 공동생활가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가정의 형태를 추구하는 시설의 수가 많음

□ 시설지원 수요 조사결과

- 경기도 소규모 시설은 유형별로 각각 다른 지원 수요를 가지고 있음
 - 노숙인시설, 아동관련 시설들은 1순위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 장애인복지시설은 1순위가 “추가 종사자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에 대한 욕구도 크다고 응답하였음
 - 노인복지시설은 역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컸음
 - 정신재활시설은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이 1순위였으며 그밖에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역시 각 시설유형별로 기대가 다름
 - 시설 전체 중에서 순위가 높았던 지원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숙인시설은 중앙이나 지자체에 의한 “기능보강이 지원”되기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복지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함께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장애인복지시설은 “기능보강사업”,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추가 종사자 지원”과 같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사자들의 기타 의견으로 대체인력 지원과 근로시간 준수, 장비교체 등 있음
 - 종사자가 역량강화와 휴식을 위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력의 유형을 다각화하여 지원하기 바라는 의견도 있음
 - 기능과 역할에 따라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뿐만 아니라 조리, 운전, 간호 등 다양한 직군의 대체인력을 필요로 함
 - 궁극적으로는 법정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며 현실적으로 점심시간 준수, 52시간 근무 시간 준수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오래되어 낙후된 시설 및 장비의 교체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욕구와 복리후생 등을 필요하는 응답이 있었음
- 이러한 필요를 종합하여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대상 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특히 소규모 시설 운영지원에 반영해야 함

□ **지원방향 및 분야별 지원방안**

- 장기적으로는 종사자의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책정 등 소규모 시설까지 균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우선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종사자의 소진을 완화시키고 시설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복지 시설에서의 가장 필요한 지원은 기능보강사업이므로 우선지원 필요
 - 노숙인자활시설은 시·군에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환경에 맞추어 시설이 입주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주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 있음
 - 이용자가 거주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며 자립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함
 - 지원방식은 공모를 통한 방식이 일반적이며, 사업계획 및 실행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시설의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공동생활가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생활시설로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원임
 - 생활시설의 특성상 상시케어가 필요하며 공휴일이나 휴가에 대한 욕구가 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한 대체인력 수급이 우선시 되고 있음
 - 복지부와 경기도가 수행하는 대체인력사업 대상시설 종사자 조건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고, 시설별 1명씩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을 제안
 - 또한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6시)과 토요일은 지원하지 않는 조건을 완화하여 야간과 주말에 가장 필요로 하는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규모 시설 중에서도 장애인시설은 유형별로 더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맞춤형 지원을 채택하고 모집에서부터 대상으로 적극 고려해야 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므로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집중 대상으로 고려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추가 종사자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과“이용자 차량지원” 사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 시설 유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상대적으로 정신재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된 경향있음
 - 이는 시설자체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신청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시설의 수도 적고 선정대상에서 고려하는 조건 중에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음
 - 최근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가 필요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우선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우선 배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유형별 욕구에 따른 지원 필요함
 - 사회복지 직능단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거주시설, 법인운영시설, 개인시설, 소규모 시설을 동시에 사업의 대상으로 모집하기 보다는 종사자 10인 이하 등 시설 구분을 명확히 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소규모 시설 중에서는 10년부터 20년 이상 된 시설이 50%를 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에서 설치운영 기간을 조건으로 넣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설치기준과 인력기준의 준수여부 및 사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각 시설별 기준충족 및 미 충족 사유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선행하고 인력기준, 수당지급 등을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함
 -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의 준수 등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제안하고 이를 시설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가능함
 - 작은 규모의 시설에 종사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생활지원 업무 등 강도높은 업무 수행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연동하여 결과에 따라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행정업무에 대해 표준화 하는 과정을 지원사업화 하는 방안 실시
 - 법률에 따른 평가를 시설운영 성과의 도구 또는 근거로 하여 결과에 따라 사후컨설팅을 받거나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평가 항목에서 전체공통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소규모시설은 상대적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시설은 평가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소규모 시설을 정부와 경기도의 대체인력 수급 사업의 우선 대상으로 배려하며 사업 수행 후의 전후의 운영성과를 비교하여 사업 지속성에 대한 결정이 가능할 것임
- 대체인력 사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형태를 다양화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확대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5
II 경기도 소규모 시설 운영현황 / 7	
1. 소규모의 시설의 개념	7
2. 경기도 소규모 시설 지원현황	14
III 소규모 시설 수요조사 / 19	
1. 조사개요	19
2. 시설운영 현황	28
3. 지원 수요조사	32
IV 경기도 소규모 시설 지원방안 / 41	
1. 시설의 지원 욕구와 지원방안	41
2. 정책제언	45
참고문헌 / 47	
부록 / 49	
경기도 소규모 시설 지원방안 연구 설문지	51

표 차례

〈표 I-1〉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1
〈표 I-2〉 연도별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수	3
〈표 II-1〉 서울시 소규모(개인운영신고)시설 현황	8
〈표 II-2〉 경기도 내 사회복지 시설현황	10
〈표 II-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모사업 추진현황	14
〈표 II-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시	15
〈표 II-5〉 차량지원 사업 예시	16
〈표 III-1〉 조사 참여 시설협회 현황	19
〈표 III-2〉 설문지 응답 시설현황	20
〈표 III-3〉 설문조사 내용	21
〈표 III-4〉 시설유형과 운영주체	23
〈표 III-5〉 시설운영 기간	23
〈표 III-6〉 지역별 운영시설 유형	24
〈표 III-7〉 종사자와 이용자 현황	26
〈표 III-8〉 직급별 종사자	27
〈표 III-9〉 경기도 소규모 시설 운영에 관한 시설 자체	29
〈표 III-10〉 소규모 시설의 평가 경험여부	30
〈표 III-11〉 소규모 시설 평가 수행기관	30
〈표 III-12〉 평가 수행 역량	31
〈표 III-13〉 법정인력기준 준수 여부	31
〈표 III-14〉 시설 유형별 지원욕구 (1순위)	33
〈표 III-15〉 시설 유형별 정부지원 (1순위)	35
〈표 IV-1〉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 주체 (중복응답)	42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6
〈그림 III-1〉 소규모 시설 건물 유형	27
〈그림 III-2〉 필요 지원사업 1순위 2순위 비교	34
〈그림 III-3〉 정부지원 순위 비교	3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복지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형이 세분화되고 개소 수 증가추세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대별되며 대부분 주거환경으로서 입소 생활하는 생활시설은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소규모 시설이라 명시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시설의 세부분류는 분야별로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소관 부서 또는 관련 법령 또한 부서마다 다르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관되고 보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는 구조임

〈표 I-1〉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	시설 유형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 법령	
노인	생활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 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주택		
		·의료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정책과		
	이용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요양보험 운영과	
		·여가	- 노인복지관	노인정책과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대상자	시설 유형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 법령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 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권리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장애인	생활	·생활 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 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 사회 재활 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시설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 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인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019)

- 연도별 보건복지통계를 보면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예산과 지역 내 시설로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노인분야의 시설과 종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재가복지시설과 일자리 시설 등이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아동공동생활 가정 및 장애인 돌봄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개별화되는 서비스와 이용자의 인권 및 보호 받을 권리 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기조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방향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임

〈표 I-2〉 연도별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수

연도		합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결핵 및 한센	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전국 시설수 (개소)	2015	18,221	8,752	4,890	3,327	403	146	6	245	452
	2017	19,298	9,428	5,092	3,507	398	153	7	249	464
경기도 종사자 (명)	2015	9,275	6,867	603	1,420	14	63	-	105	203
	2017	54,085	41,658	3,199	6,826	374	161	12	286	1,569

* 자료 : 복지통계연보(2016, 2018), 종사자 수는 경기도 통계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이용시설과 함께 신고/설치 운영되는 소규모시설에서 담당하는 이용자층 확대

- 장애인/노인 주·단기 거주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 등 신고/설치되어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담당하는 이용자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취약계층에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선호함
 - 장애인 소규모시설은 집과 같은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시설을 자신의 집처럼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집과 관련된 사회적, 심리적 장점과 안전, 사생활, 친근감,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일상생활은 무엇보다 강한 소속감과 애착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¹⁾

- 규모가 작다고는 하나 대상자 지원업무뿐만 아니라 재무·회계관리, 문서관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등의 과부하로 이직과 소진의 원인이 됨
 - 제한된 인력으로 다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소진과 이직이 잦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서비스의 연속성, 균질성, 안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시설에 기대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
 - 이용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소규모시설의 특성을 살려 개개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고유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개개인의 변화에 목표를 개별적인 지원방식이 가능해야 함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과 수요에 따른 자원공급과 서비스 질 강화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형 시설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인력부족에 대안 및 보완책 필요
 - 재원의 분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시설 지원사업(시설대상 교육, 컨설팅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형편
 - 인원이 적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비중이 큰 소규모시설 대상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소규모 시설을 정의하고 이들의 서비스 제공환경을 검토
 - 종사자 인력의 교육욕구 및 수요, 사업계획서 등 행정 처리를 위한 컨설팅 수요
 - 보조금 제공 이외 근무환경 개선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욕구 조사 실시

1) 서울시복지재단(2012)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선 마련 연구 참조

-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내 소규모 시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분석하여 도와 시·군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도출하여 제안함

2. 연구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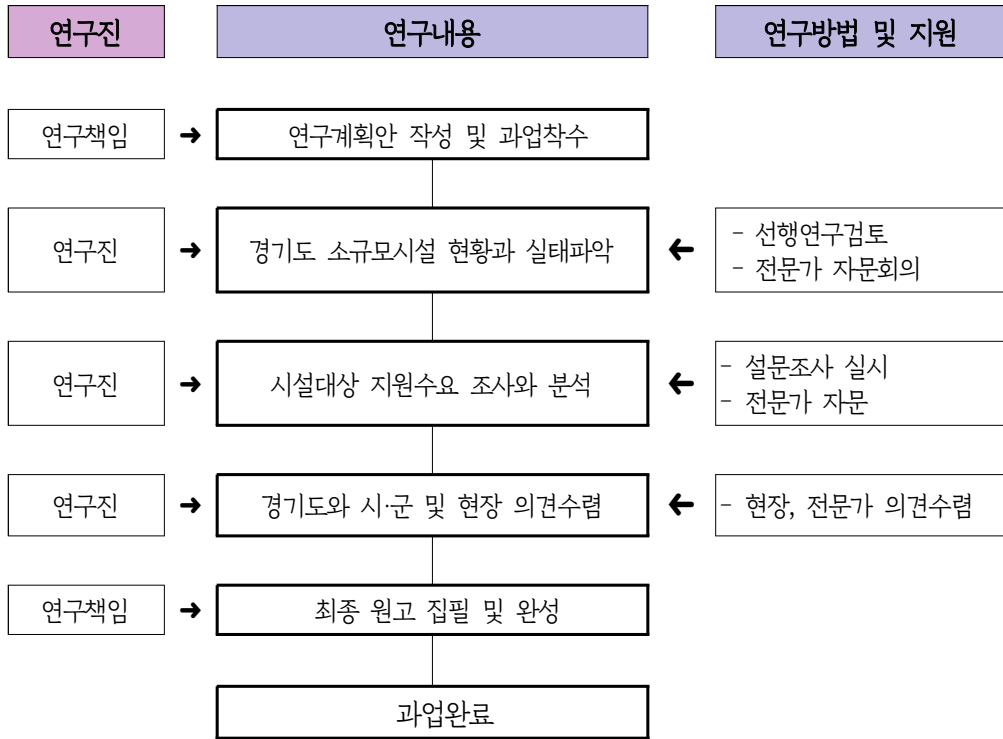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 현재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 경기도 31개 시·군에 신고·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연구 방법

- 문헌검토
 -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정의하는 시설 중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현황 검토
- 설문조사
 - 경기도 내 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의 유형과 종류 조사
 - 실제 소규모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욕구 또는 의견 확인
 - 각 시설의 협회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소속회원 대한 조사지 배포 및 수집 협조
- 자료 분석
 -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의 지원정책과 현실 반영 여부를 파악
 - 지원을 위한 타당성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조사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검토의 결과를 종합하여 소규모 시설지원 욕구 확인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현장, 학계 전문가 구성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사업 반전에 반영

〈그림 I -1〉 연구수행체계



II 경기도 소규모 시설 운영현황

1. 소규모의 시설의 개념

□ 소규모 시설의 정의와 지원 사업

- 시설의 분야 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념정리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용자의 수 또는 상근 종사자 인력의 수 등으로 규정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영위, 돌봄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을 신설 운영(보건복지부·충신대학교, 2017)²⁾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이용자 최소 10명, 인력 5명 이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이용자 최소 10명이상, 인력 6명 이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이용자 4명, 인력 1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컨설팅 진행하고 있음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로의 조건은 설립 5년 미만, 종사자 5인 이하로 한정
 -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임금기준선을 마련하는 연구를 추진한 바 있음(서울시복지재단, 2012)³⁾
 -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신고요건을 갖추 시·군·구에 신고를 완료한 시설
 - 소규모 시설의 기준은 시설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 수 규모로 구분하되 장애인, 노숙인 시설은 이용자 수 10인 미만, 노숙인 시설은 이용자수 10인 미만, 노인시설의 경우 이용

2) 보건복지부·충신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매뉴얼 개발연구

3)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2012),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선 마련 연구

시설은 30인 미만, 생활시설은 10인 미만, 아동시설의 경우는 10인 미만이나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8인 미만으로 정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와 협업으로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회계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함
- 주 대상은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표 II-1〉 서울시 소규모(개인운영신고)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설유형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노인시설	여성시설	아동시설	사회복지 시설	계
시설 수	41	6	439	26	255	43	810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기획 사업 중 소규모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도 대상을 생활인과 종사자 조건으로 구분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 및 단체 중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 정의
 -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2억원 이하인 시설 및 단체
 - 최근 1년 이내 공동모금회 배분내역이 없는 기관
- 당진시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중 우선 지원 대상을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경기도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우선지원
 - 차량지원사업 : 40인 이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이하 이용시설 우선지원
 - 지역복지 모델 발굴
 - 인권 친화적 시설 만들기 지원사업
 - 소규모 복지기관 기능보강 지원사업

-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진 평가⁴⁾를 받는 등 체계화가 이루어진 대규모 이용시설 및 거주시설과는 달리 개인시설도 다수 포함되는 소규모 시설은 상대적으로 사업수행 역량이 취약함
 - 소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수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은 인력, 행정력,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필요로 함
 - 공공에서 보다는 민간협회 차원에서 기획된 지원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며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임
- 기존 연구 및 사업에서의 예시를 종합하면 이용자가 많게는 40인 이하 적게는 4인 이하로 다양하며 종사자 수 또한 10인 이하에서 1인까지로 다양함
 - 이는 사회복지시설 안내 등에서 종사자 인력을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며 그나마 인력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으므로 종사자를 기준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중 소규모 시설을 분야에 상관없이 이용자 30인 미만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시설로 정의하고자 함
 - 소규모 시설로 정의 되는 조건을 종합하면 이용자와 종사자 수가 적은 시설이 대부분이며 운영주체는 법인과 개인운영 시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종사자 인력일 것임
 -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소규모 시설로 정의함
 - 현 상태에서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시설의 유형과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중에서도 이용자 대비 인력이 부족한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4)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 경기도 분야별 시설 현황

-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여성 및 다문화가족 분야까지 합하여 약 26,0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시설의 유형을 보건복지부에 구분한 대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지역복지,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부속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임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중 이용인원이 30명 이하,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시설 중에서도 개인 운영시설 보다 정부(중앙, 경기도와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 시설의 유형별로 소규모 시설의 수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수 전체에서 많지 않으나 그 기능과 역할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관할하는 시설의 유형도 포함되어 있음
 -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그룹 홈 등의 경우 행정관할은 여성가족부이나 복지시설의 범위에 속하므로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음
 -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시설은 기타 시설에 해당됨

〈표 II-2〉 경기도 내 사회복지 시설현황

대상자별	시설 형태	시설종류	시설 수 (개소)	생활/이용 인원(명)	종사자 (명)	
합 계			26,012	14,989,187	151,702	
소 계			12,260	818,233	44,814	
노인	생활	양로시설	77	2,736	719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32	162	100
			노인복지주택	11	2,148	225
			노인의료 복지시설	1,093	44,036	29,61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89	4,712	3,92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	62	8	
	이용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172	4,390	4,102
			주·야간보호서비스	260	5,228	2,493
			단기보호서비스	7	66	45
			방문목욕서비스	112	515	1,15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52	5,166	333	

대상자별	시설 형태	시설종류	시설 수 (개소)	생활/이용 인원(명)	증사자 (명)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59	317,673	1,975	
		경로당	9,609	420,404	-	
		노인교실	166	-	-	
		노인보호전문기관	3	-	2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인력개발, 일자리지원, 취업알선)	16	10,935	93	
소 계			662	23,298	7,065	
장애인	생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법인)	52	2,846	1,638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개인)	4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법인)	45	2,357	1,59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개인)	5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법인)	1	80	5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법인)	27	236	117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개인)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법인)	95	592	20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개인)	48		
	이용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35	6,808	1,36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27	2,402	767
			장애인 체육시설	4	1,068	42
			장애인 수련시설	-	-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1	1,166	185
			수어통역센터	31	1,212	157
			점자도서관	5	1,354	28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95	2,570	674
장애인 근로사업장	13		515	190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7		92	27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1	-	22		

대상자별	시설 형태	시설종류		시설 수 (개소)	생활/이용 인원(명)	증사자 (명)
정신 질환자	소 계			61	2,100	431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6	1,347	247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43	218	91
	이용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주간재활시설	9	394	62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2	71	11
			중독자 재활시설	-	-	-
			정신질환자 생상품판매시설	-	-	-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1	70	20			
노숙인	소 계			71	44,623	166
	생활	노숙인 자활시설		11	222	48
		노숙인 재활시설		3	358	55
		노숙인 요양시설		1	149	18
	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	42,914	26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3	80	9
		노숙인 급식시설		2	900	10
		노숙인 진료시설(보건소)		48	-	-
쪽방상담소		-	-	-		
지역주민	소 계			80	13,613,175	1,636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80	13,613,175	1,636
기타시설	소 계			34	2,897	347
	복합	결핵·한센시설		1	26	13
	이용	지역자활센터		33	2,871	334
아동	소 계			981	34,298	3,338
	생활	아동양육시설		25	1,091	622
		아동일시보호시설		2	93	76
		아동보호치료시설		1	40	23
		공동생활가정		148	779	449
	자립지원시설		-	-	-	
	이용	아동상담소		1	-	7
		아동전용시설		-	-	-
		가정위탁지원센터		2	2,046	18
		지역아동센터		788	21,916	1,881
아동보호전문기관		14	8,333	262		

대상자별	시설 형태	시설종류		시설 수 (개소)	생활/이용 인원(명)	종사자 (명)	
영유아	소 계			11,682	393,149	92,579	
	이용	어린이집		11,682	393,149	92,579	
여성 및 다문화 가족	소 계			181	57,414	1,326	
	생활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 청소년, 외국인, 공동생활)		5	70	17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44	25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3	122	5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 부자, 미혼모자, 일시지원)		12	182	49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쉼터, 자립지원, 치료재활, 회복지원)		31	8,472	247
	이용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4	-	27
			자활지원센터		3	-	18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35	-	105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41	-	133
			긴급전화센터		2	-	3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센터포함)		30	48,524	619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9년9월 현재)

- 시설의 해당분야 및 형태에 따라 욕구가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유형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욕구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가장 시급한 지원의 형태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함
 - 우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안내에서 분류하고 있는 세부유형을 참고해야 함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인지 여부와 종사자 인원이 주 기준이 될 것임

2. 경기도 소규모 시설 지원현황

□ 사회복지시설 대상 지원 사업 추진현황

-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⁵⁾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함
 - 특히 2017년 말 부터 2018년 사이에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었음
 - 사업의 대상은 소규모 시설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표 II-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모사업 추진현황

사업 명		주요 내용
복지안전망 구축지원(차량지원)	2017. 11 ~ 2018. 6	도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복지안전망 마련
복지안전망 구축지원(환경개선)	2019. 11 ~ 2018. 6	도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복지안전망 마련(환경개선)
소규모 복지기관 기능보강 지원사업(1차)	2018. 01~12	소규모 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신규 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
소규모 복지기관 기능보강 지원사업(2차)	2018. 10~12	소규모 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신규 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인권친화적 시설 만들기	2018. 01~12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인권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고 다양한 현장의 인권실천 사례 및 사업을 발굴 지원
사회복지동아리지원사업	2018. 04~12	사회복지종사자들 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동아리를 기획, 운영
지역복지모델 발굴 사업	2018. 07~12	재단에서 실시한 균형발전 관련 연구를 활용한 지역 복지 균형발전 모델 구축
2018 경기도 차량지원 사업	2018. 10~1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으로 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증진 및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개선

5) 2017년 복지안전망구축을 위한 열린복지광장,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2018년 소규모 복지기관 기능보강 지원사업, 인권친화적 시설만들기 지원사업,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사업
 2019년 인권친화적 시설만들기 지원사업

사업 명		주요 내용
사회복지 인권친화적 시설만들기	2019. 03~12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인권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고 다양한 현장의 인권실천 사례 및 사업을 발굴 지원
사회복지직능단체 네트워크 활성화지원 공모사업	2019. 06~12	사회복지현장과의 원활한 업무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와 도 단위 사회복지직능단체 활서오하를 위한 워크숍 행사지원

*자료 : 경기복지재단 내부자료

- 사업의 추진내용 및 성격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
 - 주 내용은 차량지원, 기능보강사업, 인권친화적 시설만들기, 시설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구분됨
 - 우선지원 조건 중 하나로 소규모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선정시설은 모두 포함하고 있음
 - 2017년 : 총 70개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포함
 - 2018년 : 총200여개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소규모시설⁶⁾, 사회복지시설 포함

〈표 II-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시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지원을 통한 경기도 내 복지사각지대 복지안전망 마련
사업기간	2017. 12. ~ 2018. 3. (4개월)
지원분야	·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규모	· 총 원(기관별 1,00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환경개선(분야 및 내용 제한 없음) - 시설개보수 : 개보수 경우 공사의 범위 및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 기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관련 (단, 비품 및 기자재 구입 지원 제외)
신청자격	· 정부지자체에 등록된 사업경력 1년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및 시설(2017. 1. 이전 등록) · 시설 개보수의 경우 소규모 시설(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우선지원 · 경기복지재단 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집행, 결과 및 정산보고 가능한 시설
제외대상	· 위 신청자격에 해당되나 시설환경개선 관련해 2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나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향후 받기로 확정된 기관 제외 ※ 2017년 재단 지원시설 지원제외 · 상업적 이익, 정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소규모 시설은 주로 책상(의자), 컴퓨터, 냉난방기 등 설비를 제공함

공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2017. 11. 6.(월) ~ 2017. 11. 17.(금) • 접수 2017. 11. 15.(월) ~ 2017. 11. 17.(금) 3일 간(※접수기간 3일 엄수)
제출서류	• 공문(직인포함),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제출서류
신청방법	• 이메일제출 : ***@ggwf.or.kr(메일제목 : 환경개선지원사업_기관명)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결과발표	• 11월 중(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지원의 내용은 시급성을 우선으로 하되 시설마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II-5〉 차량지원 사업 예시

사업목적	찾아가는 복지,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복지기관들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기관의 필수 인프라인 차량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인승 승합차 ※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차량구입액 2,500만원 지원(지원액 이상의 경우 시설 자부담/조달청 등록 기준으로 견적서 첨부 및 조달청 등록기준에 따라 지원금 변동 될 수 있음)
사업예산	• 총원(기관별 최대 25,000,000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시설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기도내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 ※ 사업 공고일 기준 2017.10.01. 이후 시설신고 기관 신청 불가 • 기관 설립 후 경기도의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 기관, 단체 우선지원 • 도 내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 우선지원 • 신청기관 명의로 별도 신고/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증 명의 일치
지원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거나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제재 조치 기간에 속하는 기관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기관 자부담 • 차량유지 및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비용 자부담 • 지원 후 3년간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차량사고, 고장으로 인한 5년 이내 폐기 시 경기복지재단 승인 후 폐기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될 수 있음
공고기간	• 공고 2018.10.01.(월) ~ 16.(화), 16일간
접수기간	• 접수 2018.10.10.(수) ~ 16.(화), 1주일 간(10.16.(화) 18:00까지 최종 접수기한 엄수)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직인포함),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제출서류 ※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제출 :***@ggwf.or.kr (메일제목 : 차량지원사업_기관명)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불가
심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심사, 최종심의 등
결과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0.31.(수) 10:00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지금까지의 지원 사업은 주로 기능보강사업비 제공과 차량제공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나 향후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특성과 이용시설인지 거주시설인지 시설의 유형에 따른 수요가 다를 수 있음

Ⅲ 소규모 시설 수요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내용

- 경기도 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현황과 지원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고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음
- 조사 방법 : 각 시설의 협회를 통해 설문을 배포하고 수집
 - 조사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재활 등 분야별 소규모 시설의 설문 조사를 목표로 하여 약 500여 개소 대상 조사 실시
 - 시설 마다 명단을 확보하고 가능한 많은 시설로부터 응답을 받으려 노력하였으나 개인정보 공유 문제 등에 따라 시설 리스트를 제공받지 못한 시설 유형이 있음

〈표 Ⅲ-1〉 조사 참여 시설협회 현황

일련번호	협 회 명
1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2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3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
4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5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6	경인노숙인시설연합회
7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8	경기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조사기간 : 2019. 10. 30 ~ 11. 22 (약 4주)

- 설문지 내용은 시설의 일반적 사항, 시설 운영현황, 시설 평가경험 여부, 지원 사업 수요실태 영역으로 구성
- 협회를 통해 Mail,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문항이 배포되고 수집되었음

○ 응답시설 수

- 설문지는 총 510여 개소에 보내졌으며 그 중 210개소에서 응답하였으나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9개를 제외하고 201개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 설문지 수거율은 약 41%이며 할당표집하지 않았으므로 시설유형별 모수에 따라 응답시설 수가 차이가 있음

〈표 Ⅲ-2〉 설문지 응답 시설현황

시설 구분	시설유형	응답시설 수
노인	• 노인공동생활가정	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6
	• 재가장기요양기관	3
	• 주야간보호시설	5
장애인	• 장애인단거주시설	13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9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6
	• 장애인거주시설	20
노숙인	• 노숙인자활시설	5
	• 노숙인재활시설	1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아동	• 아동공동생활가정	39
	• 지역아동센터	16
	• 임시지원복지시설	1
한부모	• 한부모가족시설	5
정신장애(사회복귀)	• 정신재활 입소시설	1
	•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6
	• 지역전환시설	0
	• 주간이용시설/직업재활시설	4
계		210

- 각 협회별로 제공된 주소록을 참고하였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개별 협회가 없으므로 각 시설 별 연락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소록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 실시가 불가능했음
- 개별 연락조차 어려운 시설은 조사에 제외됨

○ 설문조사 영역

- 시설의 일반적 사항
 - 설립연도, 시설유형, 종사자 수, 시설의 운영주체, 이용자 수, 수입(지출)을 포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
- 시설운영현황
 - 현재 소규모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내 시설지원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와 향후 지원 방안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 평가경험 여부
 - 보건복지부에서 소규모 시설을 평가 대상시설로 편입시킴으로서 평가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컨설팅 등에 대한 비예산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었음
- 지원사업 수요
 -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시급성이 있는 사업, 유형별로 요구하는 지원에 대해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
- 기타
 - 시설 지원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함
- 응답비율이 높은 영역에서부터 사업화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음

〈표 Ⅲ-3〉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설문 내용
시설의 일반적 사항	• 설립연도
	• 시설구분 (종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운영주체
	• 종사자 직급 현황
	• 시설 주거형태
	• 수입, 지출
시설 운영 현황	• 운영전반에 대한 자체판단
평가 경험 여부	• 시설평가 또는 인증여부
지원사업 수요	• 경기도 지원사업 경험 여부
	• 필요한 지원사업의 유형
기 타	• 소규모 시설 지원에 대한 의견

(1) 시설의 일반적 사항

○ 시설유형

- 201개 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이 99개(49.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아동·가족시설 55개소(27.4%), 노인시설 22개소(10.9%) 순이었음
 - 경기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유형은 노인시설(경로당 제외)이 가장 많고 아동, 장애인시설 순으로 많음
 - 모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유형별 특성은 분명하므로 각각의 요구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지원사업 계획이 가능할 것임

○ 운영주체

- 소규모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 46.8%로 가장 많고 개인이 30.3%, 기타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 종교 단체 등 비영리 단체)에 속해 운영되는 시설 순으로 나타났음
 - 지자체 직영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시설은 49.3% 정도임
- 경기도 내 소규모 시설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장애 분야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아동시설이 개인운영 시설의 수가 8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개인운영시설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편이므로 소규모 시설 중에서도 열악한 상황인 경우가 많음
- 장애인 시설은 총 97개소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개인운영시설의 비율이 31.4%를 차지함
 - 개인운영시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법인시설 보다 지자체의 보조금 등을 받은 규모가 적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시설이 많다는 의미
- 그러나 최근(2016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개인시설도 평가대상으로 포함시켜 체계화 하는 과정을 시작하였음
- 평가 경험이 없는 소규모시설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운영 측면에서의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음

〈표 Ⅲ-4〉 시설유형과 운영주체

(단위 :개수(%))

구 분	운영 주체						계	비고
	지자체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법인	개인운영	기타		
노숙인시설	-	33.3	16.7	16.7	33.3	-	100	6(3.0)
아 동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80.0	-	20.0	-	100	55(27.4)
	아동공동생활가정	-	2.6	-	12.8	82.1	2.6	
	지역아동센터	-	9.1	18.2	-	72.7	-	
장 애 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60.0	-	5.7	31.4	2.9	99(49.3)
	장애인단거주시설	12.5	68.8	6.3	12.5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3	66.7	4.2	20.8	-	2.1	
노 인	재가노인장기요양	-	100.0	-	-	-	-	12(10.9)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100.0	-	-	-	-	
	재가노인지원센터	-	62.5	6.3	12.5	-	18.8	
정신재활시설	-	25.0	8.3	8.3	58.3	-	100	12(6.0)
무응답	-	42.9	28.6	14.3	14.3	-	100	7(3.5)
계	2.5	46.8	5.0	12.4	30.3	3.0	100	201(100)

○ 시설운영 기간

- 소규모 시설들이 경기도에 설치되어 운영된 기간은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시설이 71개소(35.3%)로 가장 많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시설 수가 43개소(21.4%)였음
- 규모가 작고 오래된 시설일수록 장애인, 아동, 노인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이 많고 주거환경 등 보수가 필요해 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
- 20년 이상 된 시설도 18개소로 소규모시설의 약 10%는 1990년대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음

〈표 Ⅲ-5〉 시설운영 기간

(단위 : 개소, %)

시설운영 기간	시설 수	백분율
20년 이상	18	9.0
15년이상 20년이하	32	15.9
10년이상 15년이하	71	35.3

시설운영 기간	시설 수	백분율
5년이상 10년이하	43	21.4
5년 이하	29	14.4
무응답	8	4.0
총 계	201	100

○ 시·군별 시설유형

- 지역 환경과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될 수 있는 자원의 수준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함
- 시·군별 시설의 분포를 보면 남부에서 부천시가 응답개소수가 20개소로 가장 많았는데 장애인시설이 9개소로 가장 많고 여성아동 시설이 7개소였음
-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시·군 중 안산시에서 14개소 응답하여 비율을 가장 높았음
-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비율을 보면 남부지역에서 130개소, 북부에서 24개소가 응답하였으며 지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시설도 47개소 있었음

〈표 Ⅲ-6〉 지역별 운영시설 유형

(단위 : 개소)

지 역	시설종류					계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시설	정신재활시설	여성아동시설	
수원시	6	1	3	5	1	16
용인시	8	0	2	0	1	11
성남시	3	1	0	1	2	7
부천시	9	1	1	2	7	20
안산시	14	1	1	0	1	17
화성시	3	0	0	0	0	3
안양시	3	1	1	0	0	5
평택시	2	0	2	0	0	4
시흥시	8	0	0	0	0	8
김포시	1	0	1	0	0	2
광명시	0	0	0	0	2	2
광주시	1	0	0	0	0	1

지 역	시설종류					계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시설	정신재활시설	여성아동시설	
군포시	2	0	0	0	1	3
이천시	4	0	1	0	0	5
오산시	0	0	1	1	1	3
하남시	0	0	0	0	1	1
안성시	4	0	3	1	3	11
의왕시	2	0	0	0	0	2
여주시	1	0	1	0	0	2
양평군	4	1	0	0	0	5
과천시	2	0	0	0	0	2
남부 계	77	6	17	10	20	130
고양시	1	0	0	1	0	2
남양주시	5	0	0	0	0	5
의정부시	3	0	1	0	0	4
파주시	2	0	0	0	0	2
구리시	0	0	3	0	0	3
포천시	2	0	0	1	0	3
동두천시	0	0	1	0	1	2
가평군	1	0	0	0	0	1
연천군	2	0	0	0	0	2
북부 계	16	0	5	2	1	24

○ 시설 내 종사자 수와 이용자 수

- 종사자 현황만 보면 조사의 대상이 종사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었으나 실제 8인 이상 근무하는 시설은 전무 했으며 이용자가 10인 이하이면서 종사자가 3명 (78.6%)인 곳이 가장 많았음
 - 종사자 1명인 곳은 23개소 중 이용자가 10인 이하시설이 100%
 - 이용자가 10인 이하라고는 하나 결국 종사자 1인이 모든 이용자를 돌보는 형편임
- 종사자가 5명인 시설이 47개소로 가장 많고 3명 42개소, 2명 25개소, 1명이 운영하는 시설이 23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단순히 이용자 수 대비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1명의 종사자가 약 10명 내외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종사자 수가 5명인 시설까지 비슷한 상황임

- 응답비율이 장애인복지시설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종사자 1명이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시설의 유형에 따라 특징이 있겠으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됨

〈표 Ⅲ-7〉 종사자와 이용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이용자 수별 시설 비율						계	
	10인 이하	10~20인	20~30인	30~50인	50인 이상	무응답		
종사자 수	1명	23(100)	-	-	-	-	-	23(100)
	2명	19(76.0)	4(16.0)	2(8.0)	-	-	-	25(100)
	3명	33(78.6)	4(9.5)	-	5(11.9)	-	-	42(100)
	4명	14(73.7)	2(10.5)	3(15.8)	-	-	-	15(100)
	5명	8(17.0)	24(51.1)	3(4.3)	1(2.1)	12(25.5)	-	47(100)
	6명	1(6.7)	9(60.0)	3(20.0)	1(6.7)	1(6.7)	-	15(100)
	7명	1(12.5)	3(37.5)	3(37.5)	-	1(12.5)	-	8(100)
	8명	-	2(20.0)	5(50.0)	2(20.0)	1(10.0)	-	10(100)
	9명	-	1(33.3)	2(66.7)	-	-	-	3(100)
	10명	-	3(75.0)	-	-	1(25.0)	-	4(100)

○ 종사자 직급

- 직급별 종사자 수를 조사한 결과 201개소 소규모 시설에는 510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176명은 시설장이고 사무국자 13명, 사회복지사가 155명, 생활시설에서 입소이용자를 돌보는 생활복지사 69명, 간호사 등 특수 기능직도 57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시설은 직급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인력구조이기는 하나 직무분석을 통해 가장 업무량이 많고 인력 수급이 시급한 분야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함

〈표 Ⅲ-8〉 직급별 종사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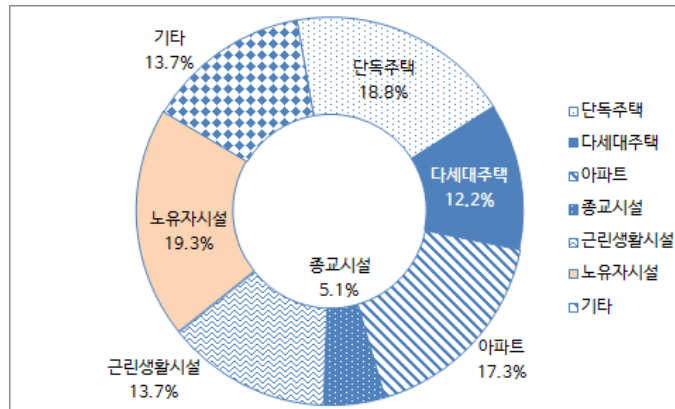
구 분	직급						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팀(과장) 사무원	간호사 등 특수 기능직	
인원수	176	13	155	69	40	57	510

○ 시설건물의 유형

- 소규모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노유자시설⁷⁾이 19.3%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각각 18.8%, 17.3%임
- 근린생활시설⁸⁾이나 다세대주택에 위치한 경우도 각각 13.7%, 12.2%며 주로 복지관의 부설 시설로 있는 기타 장소가 있음
-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생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 등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그림 Ⅲ-1〉 소규모 시설 건물 유형

(단위 : %)



7) 건축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교육 및 복지 시설 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아동 관련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 시설을 말한다.

8)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정의하며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에 해당

2. 시설운영 현황

- 시설의 행정 및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의 투명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소규모시설이지만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기본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부에서 시설현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질문을 조사에 포함하였음
 - 전반적인 운영사항은 비슷한 규모의 타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 응답을 한 경우 많음
 - 당연한 절차이나 시설 대부분(97.5%)은 시·군으로부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또한 높게 진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시설운영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인력, 급여수준과 휴식시간, 복지혜택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시설을 운영하기에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49.8%가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인력이 소규모 시설의 가장 큰 문제임을 보여줌
 -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급여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45.2%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도 43.7%가 되므로 직급이나 경력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업무 중 휴식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37.6%가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로 응답하여 소규모 시설일수록 종사자 개인의 역할이 크며 대체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33.5%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종사자 인력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시설장의 전문성은 높게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9〉 경기도 소규모 시설 운영에 관한 시설 자체

(단위 : %)

구 분	시설현황에 대한 자체 평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타 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31.1	55.1	6.1	5.1	2.6
시설의 회계 투명성	84.7	15.3	-	-	-
1년 1회 이상의 지도점검 여부	78.1	19.4	2.0	0.5	-
외부 인력의 참여 여부	20.3	29.4	42.6	6.6	1.0
사회적 책무감으로 시설 운영	44.4	40.4	12.1	2.5	0.5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75.8	22.7	1.0	0.5	-
예산현황을 긍정적으로 판단	6.1	19.7	47.5	21.2	5.6
인력의 충분성	2.5	10.2	37.6	32.0	17.8
급여수준의 충분성	3.6	7.6	43.7	23.4	21.8
시설장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	44.4	43.4	11.6	0.5	-
전반적 프로그램 진행 가능성	11.1	44.9	29.8	13.1	1.0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활동	18.8	49.2	26.4	5.6	-
업무 중 충분한 휴식의 기회	4.1	22.3	36.0	25.4	12.2
종사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수행	51.5	36.9	9.6	1.5	0.5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충분성	27.4	54.8	14.7	2.0	1.0
종사자에 대한 복지지원 혜택 충분성	9.6	19.8	37.1	22.3	11.2

*여성아동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모두 포함됨

□ 평가인증 경험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 서비스 제공의 체계를 표준화 함
- 소규모 시설 중에서도 66.2%(133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설치·운영 이후 평가 주기에 해당하는 3년 미만이므로 평가를 받지 않는 시설이 6.5%, 향후 다음 차수에 받게 될 예정인 시설은 8.5%이며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 17.9%임

- 시설평가의 목적은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우선은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평가를 받는 것은 민간시설에서 부족할 수 있게 체계 설정에 도움이 됨
- 보건복지부 세부시설로 분류되는 유형은 평가를 받지 않는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규모 중에서도 평가가 없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표 Ⅲ-10〉 소규모 시설의 평가 경험여부

(단위 : %)

구 분	평가경험 여부					계
	있다	3년 미만이라 미평가	다음 차수 예정	평가대상 아님	무응답	
비율	66.2	6.5	8.5	17.9	1.0	100

- 시설 대상 평가를 수행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경기도, 시·군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험공단,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됨
 - 경기도는 보조금을 받는 소규모 시설 대상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의를 통해 평가의 중복 부담을 감소시키고 관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Ⅲ-11〉 소규모 시설 평가 수행기관

(단위 : %)

구 분	평가 수행 기관								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험공단	경기도	시·군	사회보장정보원	기타	무응답	
비율	34.3	2.0	2.0	10.0	8.5	0.5	0.5	42.3	100

-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최소한 1회의 평가도 받지 않은 시설들이 있으므로 평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와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음
 - 201개소 응답 시설 중 80.1%(161개소)의 시설들이 평가 역량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4%만 “그렇지 않다” 로 응답하였음

- 부정적인 응답을 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체계의 표준화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규모시설의 지원방안으로 평가체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이 가능해 보임

〈표 Ⅲ-12〉 평가 수행 역량

(단위 : %)

구 분	평가를 받기에 역량이 충분한가?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비율	19.4	60.7	14.4	4.0	1.5	100

- 법정 인력기준을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71.6%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법정 인력기준은 시설의 유형과 이용인 수 대비하여 법률에 정한 대로 종사자 인력이 투입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임
 - 201개소 응답 시설 중 법정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27% 정도로 나타났음
 - 소규모 시설은 시설의 접근성, 종사자의 업무강도,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서 현실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고⁹⁾ 따라서 인력수급이나 장기근속에 어려움이 있음
 -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최소한 법정인력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방안 필요

〈표 Ⅲ-13〉 법정인력기준 준수 여부

(단위 : %)

구 분	법정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나?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비율	30.3	41.3	22.9	4.0	1.5	100

9) 백은령(20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매뉴얼

3. 지원 수요조사

□ 지원선호 사업

- 서비스 제공 분야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르며 장애인 분야에서는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을 가장 선호하였음
 - 노숙인 시설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50.0%로 가장 많았음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응답한 26개소 중 30.8%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가장 필요한 사업 1순위로 꼽았음
 -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로 응답한 시설이 11개소 중 80.0%로 가장 많았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는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종사자들이 24시간 중증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구조 안에서 교육이나 휴가를 통해 소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인력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에서는 대체인력 지원 그 다음으로 필요한 지원도 종사자의 추가인력으로 응답하고 있음(33.3%)
 - 따라서 분야별 특징과 요구에 따른 지원사업 설계가 필요함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추가 종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 수가 57.1%로 가장 많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추가 종사자 지원”과 함께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시설이 29.8%로 많은 편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인력과 함께 수요가 있는 것은 이동수단임을 보여줌
 - 노인분야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많았음
 - 종합적으로 보면 시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추가 종사자 지원(22.0%)이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19.7%),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을 필요로 한 시설이 18.5%임
 - 따라서 지원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시설의 유형과 요구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표 Ⅲ-14〉 시설 유형별 지원욕구 (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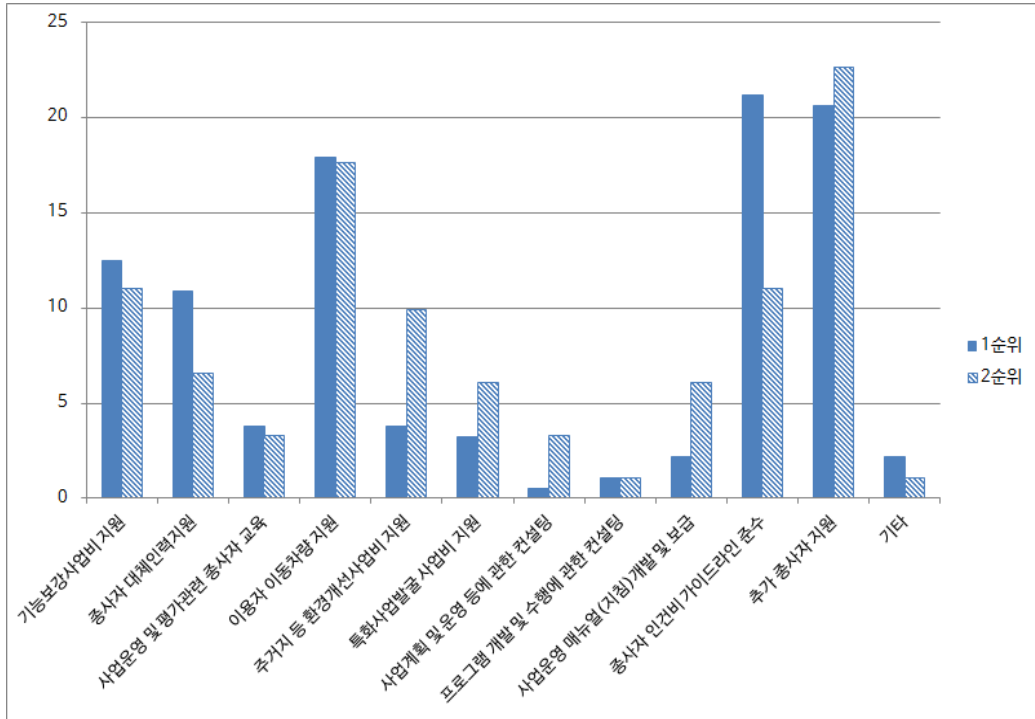
구 분	필요 지원사업 (1순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노숙인시설	50.0	-	-	16.7	16.7	-	-	-	-	16.7	-	-	100	
아 동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5.0	-	-	-	25.0	-	-	25.0	-	-	25.0	100	
	아동공동생활가정	23.1	-	7.7	26.9	7.7	-	-	-	3.8	30.8	-	100	
	지역아동센터	-	-	-	-	10.0	10.0	-	-	-	80.0	-	100	
장 애 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	36.4	3.0	-	3.0	-	-	-	3.0	18.2	33.3	6.1	10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1.4	7.1	-	7.1	-	-	-	-	-	7.1	57.1	-	1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4.9	6.4	4.3	29.8	4.3	2.1	-	2.1	4.3	-	31.9	-	100
노 인	재가노인장기요양	-	100	-	-	-	-	-	-	-	-	-	-	100
	노인주간보호센터	25.0	-	-	25.0	-	-	-	-	-	50.0	-	-	100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	-	6.3	25.0	-	18.8	-	-	-	43.8	6.3	-	100
정신재활시설	8.3	16.7	8.3	33.3	-	8.3	-	-	-	8.3	16.7	-	-	
계	13.3	11.0	4.0	18.5	4.6	3.5	-	1.2	2.3	19.7	22.0	2.3	100	

1.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2.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3. 사업운영 및 평가관련 종사자 교육 4.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
 5. 주거지 등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6. 특화사업 발굴사업비 지원 7. 사업계획 및 수행에 관한 컨설팅
 8.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 관한 컨설팅 9. 사업운영 매뉴얼(지침) 개발 및 보급 10.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11. **추가 종사자 지원** 12. 기타

- 2순위에서는“이용자 이동차량 지원”과 “추가 종사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그 밖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과 “주거지 등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음
- 1순위와 2순위 동일하게 높은 수요를 보이는 사업은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과 추가 종사자 지원으로 나타났음
-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도 시급한 사업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광역지자체 및 시·군의 경제여건에 따라 동일 적용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차량지원이나 기능보강사업 등은 대상선정에 있어 소규모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할 수 있음

〈그림 Ⅲ-2〉 필요 지원사업 1순위 2순위 비교

(단위 : %)



□ 정부 지원수요

- 지방정부(경기도, 시·군)에서 해야 할 지원에 대한 의견은 “사업운영 매뉴얼(지침)개발 및 보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노숙인 시설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음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로 응답한 시설이 40.6%,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라고 한 시설이 21.9% 순이었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는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33.3%가, “추가 종사자 지원”에 25.0%가 응답하여 인력의 보충이 매우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서는 공공생활가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주간보호시설은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대한 의견도 20.0% 있음

- 종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응답이 비슷하게 나와서 첫 번째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두 번째가 “추가 종사자 지원”이며 세 번째 네 번째는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으로 나타났음

〈표 Ⅲ-15〉 시설 유형별 정부지원 (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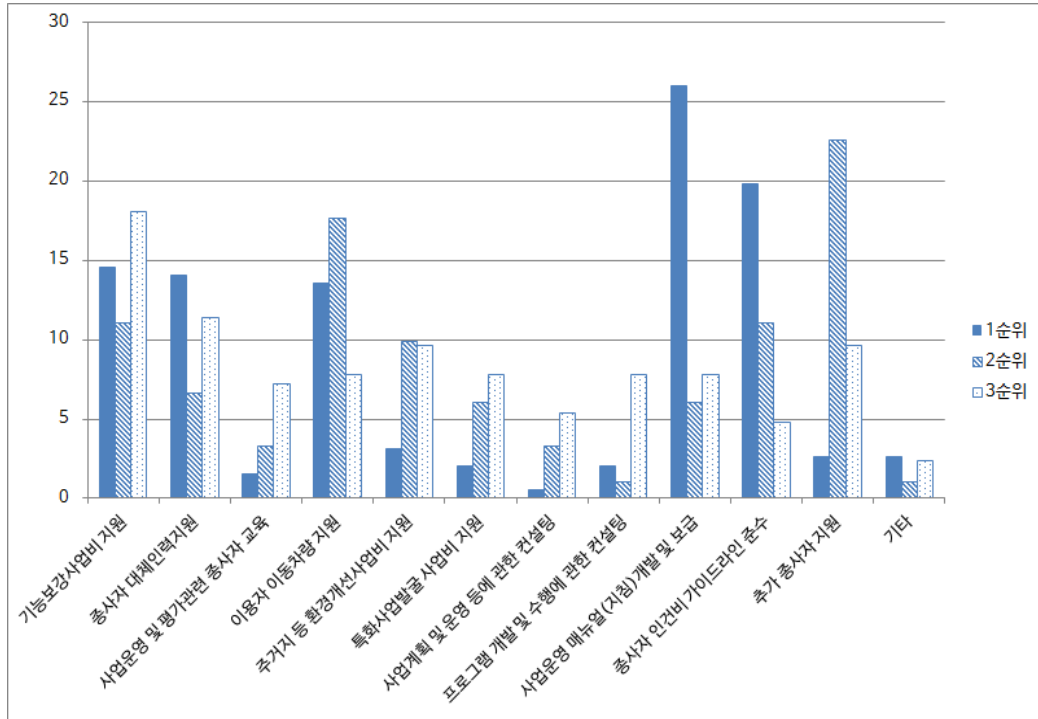
구 분	정부(경기도, 시·군) 지원 사항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노숙인시설	50.0	-	-	-	16.7	-	-	-	-	16.7	-	16.7	100	
아 동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0	-	-	-	20.0	-	-	-	-	40.0	20.0	100	
	아동공동생활가정	15.6	21.9	-	12.5	3.1	-	3.1	-	-	40.6	3.1	100	
	지역아동센터	9.1	-	-	-	-	9.1	-	-	-	72.7	-	9.1	100
장 애 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6	33.3	2.8	-	5.6	-	-	5.6	-	19.4	25.0	2.8	100
	장애인단거주시설	20.0	6.7	-	13.3	-	6.7	-	-	-	6.7	46.7	-	1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9.1	6.4	-	27.7	2.1	-	-	4.3	-	4.3	34.0	2.1	100
노 인	재가노인장기요양	-	100	-	-	-	-	-	-	-	-	-	-	100
	노인주간보호센터	25.0	-	-	25.0	-	-	-	-	-	50.0	-	-	100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6.3	6.3	25.0	-	-	-	-	-	56.3	6.3	-	100
정신재활시설	25.0	8.3	8.3	16.7	-	16.7	-	-	-	8.3	16.7	-	100	
계	15.1	14.1	1.6	14.1	3.2	2.2	0.5	2.2	-	23.8	20.5	2.7	100	

1.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2.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3. 사업운영 및 평가 관련 종사자 교육 4.이용자 이동차량 지원
5. 주거지 등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6. 특화사업 발굴사업비 지원 7. 사업운영 매뉴얼(지침)개발 및 보급
8.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 관한 컨설팅 9. 사업운영 매뉴얼(지침)개발 및 보급 10.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11. 추가 종사자 지원 12. 기타

- 소규모 시설들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자 하는 1순위는“사업운영 매뉴얼(지침) 개발 및 보급”이 가장 많고, 2순위 중 가장 많은 것은 “추가 종사자 지원”, 3순위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으로 나타났음
- 시설에서 가장 원하는 정부의 지원은 구체적인 사업운영 매뉴얼과 추가종사자 지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정리할 수 있음

〈그림 Ⅲ-3〉 정부지원 순위 비교

(단위 : %)



□ 기타의견

- 아래 내용은 조사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했을 때 응답자가 기록한 내용을 축약하였음
- 시설의 특성 상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사 이외에도 기능직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도 있으므로 인력지원을 지원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인력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유형별 필요에 맞는 인력의 배치 및 대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직급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있음에도 추가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
 - 예를 들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중증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시설에서는 시설장과 사회복지교사 외에 기능직인력 필요 (사무원, 조리원, 운전원 등)

- ①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케어, 재활, 운전 및 식사 까지 준비하는 등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은 **사회복지사에게 너무 많은 업무, 역할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번아웃(burnout), 소진으로 빠르게 이우러지며, 이직률 또한 아주 높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짧은 근속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안전 사고, 인권 문제로 연결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안전하게 케어/재활 할 수 있는 인적 환경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현재는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연차를 받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③ 1인 직원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체인력 파견조건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의 필요(행사, 교유그 출장, 교육 등 직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모든 상황)에 따라 파견을(지급처럼 연가 등 규정을 지으면 1인 직원시설은 상대적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실정임)
- ④ 소규모시설은 생활시설이다 보니 1~2인 종사자가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그 점이 힘들다. 하지만 **경기복지재단의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외부펀드지원을** 통해 소규모시설을 운영하여 과거보다는 어려움이 줄어들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대체인력지원과 외부지원 펀드 등이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 종사자들의 법정근무시간 준수가 절실한 하며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
 - 근로기준법 상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의 부재와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므로 경기도 보조금 등으로 복리후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함

- 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직원들의 점심휴게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휴게 시간 미제공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들은 한 순간이라도 혼자두면 도전적 행동 및 도망자해, 상해를 일으켜서 사회복지사들이 점심시간에도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휴게시간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심휴게 시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② 이용인 대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충원(대체인력, 연차사용)**이 필요합니다.
- ③ 대상자와의 상담장면에서 대상자들은 오랜 거리 생활과 음주로 인하여, 결핵 등 각종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담 중 몸싸움과 종사자들을 위협하는 행위, 폭력을 가할 경우 위협에 처합니다. **위험수당이 신설되어 대처방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낙후된 시설·장비 교체가 시급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① 기능보강(세탁기 등)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 ② 오래된 컴퓨터로 행정업무를 하려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신속한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무실에 최신 컴퓨터로 교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③ 노후 된 냉난방기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명확한 시설운영 규정 및 지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안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 및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소규모시설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시·군과 마찰이 있습니다. 사업운영 매뉴얼 개발이 시급합니다.

○ 종사자 역량강화

- 기본행정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까지 종사자가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와 대체해 줄 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임

- ① 기본행정(인사노무, 재무회계)에 관한 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필요, 운영자의 회계 및 법 규정(과로힘방지, 근로시간준수, 인권, 등) 준수에 대한 기본 마인드 형성 프로그램 필요
- ② 기관별 목적, 특수성에 맞는 장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1년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③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 조사결과 종합

- 경기도 내 소규모 시설은 장애인복지 시설이 수와 유형이 가장 많고 조사의 응답 비율도 가장 높았음
 - 특히,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의 수가 많고 그 중에는 개인운영시설 31.4%
- 시설은 설치운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 시설이 약 52%를 정도로 낙후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
- 종사자 수는 2~5명이 10인 이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시설이 가장 많음
- 시설이 위치한 건물 유형은 노유자시설 이 19.3%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18.8%, 아파트도 17.3%로 나타났음
 - 공동생활가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가정의 형태를 추구하는 시설의 수가 많음
- 경기도 소규모 시설은 유형별로 각각 다른 지원 수요를 가지고 있음
 - 노숙인시설, 아동관련 시설들은 1순위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 장애인복지시설은 1순위가 추가 종사자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에 대한 욕구도 크다고 응답하였음
 - 노인복지시설은 역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컸음
 - 정신재활시설은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이 1순위였으며 그밖에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역시 각 시설유형별로 기대가 다르게 나타났음
 - 시설 전체 중에서 순위가 높았던 지원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숙인시설은 중앙이나 지자체에 의한 기능보강이 지원되기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복지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함께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장애인복지시설은 기능보강사업,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추가 종사자 지원과 같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사자들의 기타 의견으로도 경기도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음
 - 종사자가 역량강화와 휴식을 위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력의 유형을 다각화하여 지원하기 바라는 의견도 있음
 - 기능과 역할에 따라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뿐만 아니라 조리, 운전, 간호 등 다양한 직군의 대체인력을 필요로 함
 - 궁극적으로는 법정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며 현실적으로 점심시간 준수, 52시간 근무 시간 준수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오래되어 낙후된 시설 및 장비의 교체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욕구와 복리후생 등을 필요하는 응답이 있었음
- 이러한 필요를 종합하여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대상 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특히 소규모 시설 운영지원에 반영해야 함

IV 경기도 소규모 시설 지원방안

1. 시설의 지원 욕구와 지원방안

1) 소규모 시설 지원 필요성과 현황

□ 이용자의 수요와 시설운영 여건

- 이용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소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증가하였음
 - 취약계층에 일정기간 주거와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휴식을 갖도록 하는 목적의 소규모 시설의 유용성 확대
 - 사회적, 심리적 안정과 개인화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강한 소속감과 애착을 발달시킬 수 있는 형태의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
- 대상자 지원과 행정업무 등 업무부담에 따른 종사자 소진이 발생함
 - 제한된 인력으로 다양한 업무 감당하는 종사자들의 소진과 이직의 원인 됨
 - 이는 서비스의 연속성, 균질성,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시설유형의 우선순위 없이 전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이루어짐
 - 경기도 소규모 시설들의 2019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2.9%, 일반기업에서 20.1%, 지자체에서 17.3%가 공모를 통해 지원 받아 수행하였음
 - 시설의 규모와 별개로 지원사업에 필요한 공모와 수행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적절한 유형의 지원을 통해 소규모 시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표 IV-1〉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 주체 (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지원사업 주체					
	경기도·복지재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군	일반기업
비율	17.3	22.9	9.8	12.6	17.3	20.1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서 “예”로 응답한 시설들(총 117개소)이 지원사업 제공자에 대해 응답한 결과

-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지원사업의 내용은 주로 기능보강사업과 차량지원 등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
 - 공공과 민간에서 공통적으로 지원 방식을 결정한 상태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상은 31개 시·군에 설치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행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설 보다는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시설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원의 방향

- 장기적으로는 종사자의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책정 등 소규모 시설까지 균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할 것임
 - 인건비 기준 준수, 시·군별 사업예산 확보 및 제공 등의 문제도 조속히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
 -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시설현장과 논의와 합의에 따라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단기적으로는 우선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종사자의 소진을 완화시키고 시설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시설, 아동·가족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과 지역복지 시설 등 유형과 분야에 따라 다른 욕구가 있음
 -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시설의 규모를 감안한 지원사업의 안배가 있어야 함

2) 분야별 지원방안

□ 노숙인 분야

- 노숙인복지 시설에서의 가장 필요한 지원은 기능보강사업비로 나타났음
 - 경기도 내 노숙인시설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 수는 노숙인 자활시설 12개소, 노숙인재활시설 2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 등임
 - 특히, 노숙인자활시설은 시·군에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환경에 맞추어 시설이 입주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주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 있음
 - 따라서 이용자가 거주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며 자립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함
-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는 조사에서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합당한 사용계획을 받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지원방식은 공모를 통한 방식이 일반적이며, 사업계획 및 실행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시설의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 및 환경 영역은 평가지표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평가 이후에는 결과가 정확하게 도출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비용의 사용계획 등을 세울 수 있음

□ 아동복지분야

- 아동공동생활가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같은 생활시설로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응답함
 -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는 많은 소규모 시설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속히 이루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생활시설의 특성상 상시케어가 필요하며 공휴일이나 휴가에 대한 욕구가 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한 대체인력 수급이 우선시 되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대체인력사업¹⁰⁾ 등을 연계하여 업무를

10) 국고지원 거주시설, 종사자 5인 이하 시설 대상

-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지원 /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우선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시설유형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 보육사(지역아동센터 포함)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등

- 대신할 수 있는 인력파견에 우선 대상으로 고려해야 함
- 대상시설 종사자 조건을 5인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고, 시설별 1명씩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6시)과 토요일은 지원하지 않는 조건을 완화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복지분야

- 소규모 시설 중에서도 장애인시설은 유형별로 더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맞춤형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므로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집중 대상으로 고려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추가 종사자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과 “추가 종사자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능보강사업비에도 종류가 다양할 것이나 우선 기본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설 내부의 시설·설비를 갖추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추가 종사자 지원”과 함께 “이용자 이동차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대상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신재활 분야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과 “이용자 차량지원” 사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 시설 유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상대적으로 정신재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된 경향이 있음
- 이는 시설자체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신청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시설의 수도 적고 선정대상에서 고려하는 조건 중에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음
- 최근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가 필요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우선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 소규모 시설에 대한 우선 배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유형별 욕구에 따른 지원 필요함
 - 사회복지 직능단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거주시설, 법인운영시설, 개인시설, 소규모 중에서도 종사자 10인 이하 등 구분을 명확히 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지 여부를 조건에 넣으면 구분이 모호해 질 수 있으며 경기도 내 시설로서 역할 수행이 중요하므로 조건은 가능한 완화하여 지원
 - 소규모 시설 중에서는 10년부터 20년 이상 된 시설이 50%를 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에서 설치운영 기간을 조건으로 넣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설치기준과 인력기준의 준수여부 및 사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인력의 수급 현황은 시설 자체의 환경과 여건도 있으나 접근성이나 업무의 강도,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각 시설별 기준충족 및 미 충족 사유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선행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함
 -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의 준수 등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가능함
 - 작은 규모의 시설에 종사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생활지원 업무 등 강도높은 업무 수행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연동하여 결과에 따라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행정업무에 대해 표준화 하는 과정을 지원사업화 하는 방안 검토
 - 법률에 따른 평가를 시설운영 성과의 도구 또는 근거로 하여 결과에 따라 사후컨설팅을 받거나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평가 항목에서 전체공통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소규모시설은 상대적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시설은 평가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소규모 시설을 정부와 경기도의 대체인력 수급 사업의 우선 대상으로 배려하며 사업 수행 후의 전후를 비교하여 지속성에 대한 결정이 가능할 것임
 - 대체인력 사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형태를 다양화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확대

참고문헌

- 당진시복지재단(2018), 당진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 연구-지역아동센터와 아동·장애인가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
- 보건복지부(2016), 『보건복지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17),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2018), 『보건복지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 보건복지부(2019),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보건복지부·충신대학교(2017),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보건복지부·충신대학교(2017),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2012),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선 마련연구』
- 손광훈(2015), 2015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실태 현황과 개선방향, 2015 정책토론회 자료집, 부산시사회복지협회
- 안정선(2019),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 방안 연구 -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 성공회대학교 학위논문

부 록

경기도 소규모 시설 지원방안 연구 설문지

경기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 연구 설문지

안녕하세요?
 귀 시설의 발전과 귀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 분야 관련 연구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경기도 내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도와 시군에 제안, 공유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귀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고, 개인의 의견과 정보는 개별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계법에 따라 엄격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편한 마음으로 설문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써 작성하신 설문내용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평가컨설팅팀 유정원 연구위원 (☎ 267-9363)
 이영미 전문연구원 (☎ 267-9365)



지역(시군)	시군
응답 시설명	

조사일시	2019년 __월 __일 __시
------	-------------------

일련번호		

1. 시설의 일반적 사항

○ 본 질문은 귀 시설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 1. 귀 시설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 년
- 2. 귀 시설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1	시설 구분	() ① 생활시설	() ② 이용시설	() ③ 생활시설+이용시설
2	시설 종류 1	() ① 장애인시설	() ② 노숙인시설	() ③ 노인시설
		() ④ 정신재활시설	() ⑤ 여성아동시설	
3	시설 종류 2	() ① 장애인 생활시설	() ②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① 노숙인 자활시설
		() ③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④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② 노숙인 재활시설
		() ① 노인양로시설	() ② 노인복지주택	
		() ③ 노인요양시설	()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⑤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 ⑥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 ⑦ 노인단기보호서비스 시설	() ⑧ 노인방문목욕서비스 시설	
		() 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① 정신재활시설 - 입소시설		
		() ② 정신재활시설 - 공동생활가정		
		() ③ 정신재활시설 - 지역전환시설		
		() ④ 정신재활시설 - 주간이용시설/직업재활시설		
		() ① 아동양육시설	() ② 아동공동생활가정	() ③ 지역아동센터
		() ④ 모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 ⑤ 모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	
		() ⑥ 모부자가족복지시설 - 자립	() ⑦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기본	
		() ⑧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공동생활		
		() 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공동생활	() ⑩ 일시지원복지시설	

- 3. 귀 시설의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현원기준) ()명
- 4. 귀 시설의 이용자(생활인) 수는 몇 명입니까? (현원기준) ()명
- 5. 귀 시설의 운영 주체는 무엇입니까? ()
 - ① 정부-지자체 ② 사회복지법인 ③ 비영리민간단체 ④ 기타법인
 - ⑤ 개인운영 ⑥ 기타 ()

2. 시설 운영 현황

○ 본 질문은 시설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1. 우리 시설은 다른 유사시설과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 우리 시설은 회계가 투명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 우리 시설은 시·군으로부터 지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받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 우리 시설에는 외부사람들의 참여가 많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5. 우리 시설운영은 개인의 소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책무성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6. 우리 시설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7. 우리 시설은 예산상황이 좋은 편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8. 우리 시설은 업무에 비해 인력구조가 충분한 편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9. 우리 시설은 업무에 비해 급여수준이 충분한 편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0. 우리 시설의 시설장은 전문성이 높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1. 우리 시설에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2. 우리 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연계활동을 잘 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3. 우리 시설은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이 주어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4. 우리 시설 종사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5. 우리 시설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6. 우리 시설 종사자는 복지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 시설 평가 경험 여부

○ 본 질문은 시설평가와 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거나 해당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7. 귀 시설은 지난 3년간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래 범례에서 선택해주시오.
() ① 있다 (평가기관 : _____) () ② 신고 설치 3년 미만으로 받지 않았다
() ③ 다음 차수에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 ④ 평가대상 시설이 아니다

범례) 평가기관 : A. 보건복지부 B. 여성가족부 C. 국민건강보험공단 D. 경기도 E. 시군

18. 귀 시설은 지난 3년간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래 범례에서 선택해주시오.
() ① 있다 (인증기관 : _____) () ② 신고 설치 3년 미만으로 받지 않았다
() ③ 기회가 오면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 ④ 인증을 신청한 적이 없다

범례) 인증기관 : A. 보건복지부 B. 여성가족부 C. 국민건강보험공단 D. 경기도 E. 시군

19. 귀 시설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기 위한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0. 귀 시설은 법정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9-25

경기도 소규모시설 지원방안 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gg.go.kr